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내 수 면 가 두 리 양 식 어 업 면 허 기 간
연 장 불 허 에 따 른 손 실 보 상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설치·운영,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나. 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제2조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손실보상 지원팀”을 둠

다. 보상금 지급 신청 및 결정(제8조 ~ 제12조)

-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출서류, 신청인대표자 선정, 보상금 지급신청 서류 보완 요청, 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 결정 통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라. 재심의 신청(제13조)

-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상금 재심의 신청서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마. 권한의 위임(제1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어업인 단체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정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1. 손실보상 계획의 수립

2. 법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손실보상 지원팀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법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대책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한 경우

4.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대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대책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대책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대책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①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책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내수면 가두리어업의 면허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2.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3.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9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대책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① 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보상금의 신청, 대책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보상금의 지급청구 및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대책위원회의 보완 요청) 대책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대표자, 제9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급결정) 대책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대책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의 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대책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 단체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 시행한다.

보상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업종 및 면적	면허번호	어업 종류	면적 (어업권)
③ 피해 발생장소 (구체적 작성)	④ 피해 발생일		
⑤ 피해내용	○ 피해명세 및 산출근거: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액(원)		
⑥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내수면 가두리어업의 면허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2.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1부 3.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그 밖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이 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보상대책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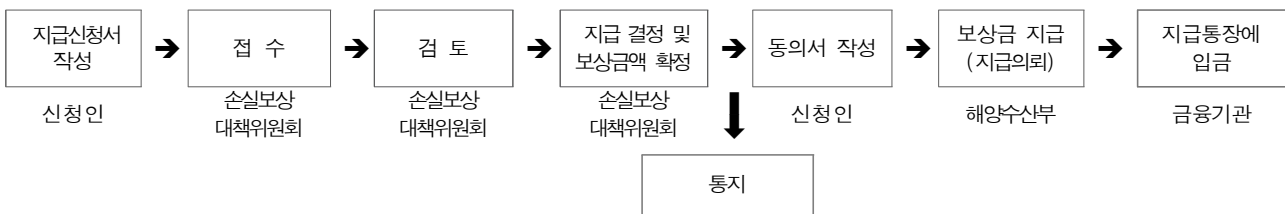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 신청인은 보상금 지급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②란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업종 및 어장의 면적 등을 적습니다.
- ③, ④란에는 실제 피해 발생장소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 ⑤란에는 첨부한 피해 증빙자료에 따른 피해 명세(면적 포함) 및 산출액으로 작성합니다.
- ⑥란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을 적습니다. 이 경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외에 증명가능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첨부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위임장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위임자)은 위 사람에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 표시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보상금의 신청 ☐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청구 ☐ 보상금의 수령 년 월 일				
위임자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위임사유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첨부서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에 서명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제3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보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서식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 시마다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보 상 금 결 정 서				
결정번호		제 호		
보상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 문				
지급액	금액 : 원정(₩)			
결정내용은 뒷면에 작성				
년 월 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결 정 내 용	
항 목	금 액
보 상 금	금액 : 원정(₩)
합 계	금액 : 원정(₩)
기지금액	금액 : 원정(₩)
지 급 액	금액 : 원정(₩)
[산출명세]	

보상금 결정통지서

결정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귀하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붙임 보상금 결정서와 같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아래 적힌 방법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금 결정에 동의할 경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대책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금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보상금 청구 및 수령용) 1부

·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다.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2.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대책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보상금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대책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결정통지서(기각용)

결정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귀하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금 결정서의 내용으로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대책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보상금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보상금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보상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상대상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신청사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대책위원회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대책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